

제344회 정례회
2015.12.01.(화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교육위원회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5.12.01.(화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15년 11월 04일

다. 회부일자: 2015년 11월 05일

라. 상정일자: 2015년 11월 13일

(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기획관 김왕년)

가. 제안이유

세수결손에 따른 교육재정의 어려움,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, 경직성경비 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해, 순세계잉여금의 20%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채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산정·교부되는 경우에는 감채기금을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설치 근거 조항 정비(안 제1조)
- 2) 기금조성에 대한 규정 완화(안 제2조제2항)
- 3)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: 반기환)

- 본 개정조례안은 세수결손에 따른 교육재정의 어려움 등에 대처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감채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예외규정을 두어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안 제1조는 조례 설치 근거 조항을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(「지방자치법」과의 관계)에서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로 변경하여 명확히 하였고,
- 안 제2조2항에서는 “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”에서, 다만 ‘지방채의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산정·교부되는 경우’에는 ‘그러하지 아니하다’로 예외규정을 두어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 하였으며,
-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9. 첨부서류: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“이라 한다)” 을 “충청북도교육감”
으로,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
교육청 감채기금(이하 “기금“이라 한다)” 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
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금” 을 “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(이하 “
기금“이라 한다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교육감” 을 “충청
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“이라 한다)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
같이 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조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52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
금액을 직접 지방채 원리금으로 상환한 경우
2. 지방채의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산정·교부되는 경우

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1항의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제6조(기금의 조성) ① (생략)</p> <p>② 교육감은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 기금운용 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	<p>1. 「지방재정법」 제52조에 따라 <u>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방채 원리금으로 상환한 경우</u></p> <p>2. 지방채의 상환재원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산정·교부되는 <u>경우</u></p> <p>제6조(기금의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제1항의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<u>제1항의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5.6.22.] [법률 제13335호, 2015.6.22. 일부개정]

제3조(「지방자치법」과의 관계)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「지방자치법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 또는 “시·도지사”는 “교육감”으로, “지방자치단체의 사무”는 “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”로, “자치사무”는 “교육·학예에 관한 자치사무”로, “행정자치부장관”·“주무부장관” 및 “중앙행정기관의 장”은 “교육부장관”으로 본다.

□ 지방자치법 [시행 2015.6.4.] [법률 제12738호, 2014.6.3. 타법개정]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“재산”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